의안번호	2214275
의 뢰 인	임오경의원
회 답 일	2025.12.2.
추계번호	25C6165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3(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・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(이하 “신고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2	안 제6조의4(신고포상금 지급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의3(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조의4(신고포상금 지급)	

2. 상세사유

가. 신고기관 지정 및 비용 지원(안 제6조의3)

❑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, 신고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❑ 다만,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 이후 업무의 공공성, 운영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고기관을 지정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어, 신고기관의 현행 업무수행능력 및 관련 인력 등을 확인할 수 없고, 신고업무를 처리하는 방식(신고시스템의 별도구축 여부 등)에 따라 소요인력 및 제반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, 신고기관 운영 예산 규모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

나. 신고포상금 지급(안 제6조의4)

❑ 개정안은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의 개념을 정의하고, 해당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제1항)

❑ 개정안(안 제6조의4)과 같이 안 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그에 따라 포상금 지급 예산 편성이 되는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

  ○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시점에서 그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❑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1항 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